##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4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정진욱·정준호·이상식

민형배 · 조인철 · 박균택

양부남 • 전현희 • 복기왕

강준현 · 염태영 · 박수현

박희승 • 이용우 • 이광희

황명선 · 김승원 · 이성유

채현일 · 송재봉 · 김태선

서영석 · 문대림 의원

(23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전제조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류 등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소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정부의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자 이 법에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와 사진·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와 사 진·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7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			
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u>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서류와 사진·영상물 등</u>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